#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4조(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① ~ ④	제24조(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규칙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8. <u>규칙 제4조의3제1항제4호의</u>	• 문구 수정, 별표 제목을
탁송품 과세운임표에 따른 운임은		규칙과 동일하게 "탁송
별표 제1호의 특급탁송화물 과세운	별표 제1호와 같다. 이 경우 규칙 제	품"으로 통일
임표에 따른다. < 후단 신설 >	4조의3제1항제4호에서 "운임을 알	• 규칙의 "운임을 알 수
	수 없는 경우"란 수입신고를 할 때	없는 경우"에 대한 의미
	운임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	명확화
	는 서류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u>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u>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31조(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수입	• 제4방법을 적용할 수
	물품)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없는 사유를 예시로 규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정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u>1. 법 제33조제2항의 경우</u>	
	2. 영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입	
	신고일부터 90일 이내 판매되는 가격	
	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33조(동종・동류비율 산출)		
③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방법	3. 제34조에 따른 방법으로 비교대상	• (조·항 이동) 제33조
으로 비교대상업체가 2개 이상 선정되	업체가 2개 이상 선정되지 않는 경우	제3항에서 이동
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는다.		
	<u>4. 제36조에 따라 영 제27조제5항제1</u>	•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	일반경비의 비율을 계산
	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	할 수 없는 경우에 제4
	비의 비율"(이하 "납세의무자 비율"	방법을 적용할 수 없도
	이라 한다)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록 규정
<u>제31조(제4방법 적용요건)</u> ① (생 략)	제32조(법 제33조에 따른 금액 산정 시	
	<u>고려사항)</u> ① (현행과 같음)	이동, 조 제목 변경
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의 "조세와 그	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세	• 문구 수정

박의 공과금"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제4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조세등을 적용한다.

③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 수입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매 신고건수별로 법 제 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공제요소비용을 계산하는 대신에 일정기간 동안의 국 내판매가격에 대한 공제요소비용의 비 율을 산출하여 적용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영 제30조에 따라 공제율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33조(동종·동류비율 산출) ⑤ 세관장 은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및 납세의무 와 그 밖의 공과금"은 세관장이 제4방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가격을 기 초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③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문구 수정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고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장은 매신고건별로 법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제33조제3항각호의 금액(이하 "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계산하는 대신에 영제30조에따라일정기간동안의국내판매가격에대한 공제금액의 비율(이하 "공제율"이라한다)을 산정하여 적용할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산출대상 품목군 등의 결정) ① 세관장이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동종

• 산출대상 품목군을 결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자의 수입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의 범위를 결정한다.

1.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한 수입물 품(이하 이 조에서 "산출대상 품목군" 이라 한다)

2. 제1호의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 • 동류 물품의 품목번호

- 동류비율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결정 한 납세의무자의 제4방법 적용대상 수 입물품(이하 "산출대상 품목군"이라 한다)별로 산출하여야 한다.
- 1. 해당 수입물품의 관세 · 통계통합품 목분류표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 라 하다)
- 2. 해당 수입물품 및 관련 산업의 특 성
- 3. 납세의무자의 취급품목, 국내판매형 태. 사업부문 및 회계자료의 구분 여 부 등 사업의 내용
-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동종 동류 품목번호를 려하여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ㆍ동류 물품의 품목번호의 범위(이하 "동종· 동류 품목번호"라 한다)를 연도별로 결정하여야 한다.
- 1. 산출대상 품목군의 10단위부터 2단

규정

결정하는 구체적인 절차 규정

제33조(동종·동류비율 산출)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결정된 품목번호의 범위에 대한 연도별 수입실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상위 100개 업체를 선정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선정된 100개 업체

위까지의 품목번호 중 대표성이 있는 품목번호. 다만, 품목이 다양한 경우 여러 품목번호 단위로 결정할 수 있 다.

2. 산출대상 품목군의 전체 수입액에 서 차지하는 수입비중이 80% 이상인 품목번호. 다만, 제34조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다른 산업부문의 업체가 선정될 우려가 있는 품목번호 등은 제외할 수 있다.

제34조(비교대상업체의 선정) ① 세관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 군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들을 비교대상업체 후보군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산업의 특성과 연도별 수입실적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업체 후보군의 규모를 조정할 수있다.

1.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연도에 동종

- (조·항 이동) 제33조제 6항에서 이동, 최초 단계에서 동종·동류 품목번호와 업종 부호를 동시적용, 선정단계별 업체수제한(100개, 30개) 삭제 비교대상업체 후보군의규모 조정 근거 마련
- (조·항 이동) 제33조제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연도별 수입실적 기준 30개 업체를 비교대상 후보업체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업체만을 비교대상 후보업체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

- 가. 신용평가기관에서 조회되는 납세 의무자의 업종. 다만. 납세의무자가 여러 품목군을 취급하거나 납세의 무자의 업종과 산출대상 품목군이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산출대상 품 목군을 주로 취급하는 업종으로 할 수 있다.
- 나. 가목의 업종, 납세의무자가 제시 한 주요 경쟁업체의 업종 등을 고 려하여 통계청에서 정한 「한국표 준산업분류표」의 업종 분류 기준 에 따라 선정한 연계 업종

• 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업체

2. 수입시점과 동시 또는 유사한 시 • 업종 부호의 출처 변경 점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 가.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 록 정보로서 납세의무자의 업종

나. 가목의 업종, 주요 경쟁업체의 업종.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 당하는 물품을 주로 취급하는 업 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부가 가치세법 . , 「법인세법 .

6항 및 제7항에서 이동. 업체수 제한 삭제

및 업종 부호의 기준 시 점 규정

<신 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하는 외부감사대상법 인으로서 산출대상 연도의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인 업체. 다만. 그 밖 에 외부감사 결과가 적정함을 확인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의 업종

-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비 비교대상업체 선정 시 교대상업체 후보군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를 비교대 상업체로 선정한다.
- 1.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연도별 수입금액이 납 세의무자의 해당 수입금액의 100분 의 50 이상이고 100분의 150 이하인 업체

동종 · 동류 품목번호에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동종 · 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 납세의무자의 연도별 수 납세의무자의 연도별 수 연도별 수입금액 입금액 × 50% 입금액 × 150%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하는 외부감사대상법 인으로서 산출대상 연도의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인 업체. 다만. 그 밖 에 외부감사 결과가 적정함을 확인

충족조건

- 납세의무자의 거래 규 모를 고려하여 수입금 액이 유사한 업체 선정 기준 신설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업체는 비교대상 후보업체에 포함할 수 있다.

- 3.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 물 품의 국내판매형태(상품 판매, 제조 가공 후 판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 다만. 손익계산서에 판매형태 별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구분되 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판매형태를 병행하고 있는 업체도 비교대상 후 보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 4. 제3호의 국내판매형태에 대한 매 출액이 매출원가 보다 많은 업체
- ⑧ 제7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 후 보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제외하고 비교대상업 체를 선정한다.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 포함할 수 있다.

- 3.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 물 품의 국내판매형태(상품 판매, 제조 가공 후 판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 다만. 손익계산서에 판매형태 별로 매출액 및 매출워가가 구분되 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판매형태를 병행하고 있는 업체도 비교대상업체 로 선정할 수 있다.
- 4. 제3호에 따른 국내판매형태에 대 한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많은 업 체
-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업체 (조•항 이동) 제33조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업체를 제외한다.
  - 8항에서 이동, 비교대상 업체 선정 시 제외조건

- 1. 동종·동류 물품의 수입액 비중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출대상 품목군의 국내판매형 태가 상품 판매인 경우: 상품매출 원가의 30퍼센트 미만
- 나. 산출대상 품목군의 국내판매형태가 제조가공 후 판매인 경우:제품매출원가의 10퍼센트 미만

2.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이 현저 한 차이가 나는 경우 가. 비교대상 후보업체의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나. 제7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

- 1. 매출원가 대비 동종·동류 품목번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금액 의 비율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해당하는 업체
  - 가. 산출대상 품목군의 국내판매형 대가 상품 판매인 경우: 상품 매 출원가 대비 동종·동류 품목번호 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금액 의 비율이 100의 30 미만
  - 나. 산출대상 품목군의 국내판매형 대가 제조가공 후 판매인 경우: 제품 매출원가 대비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 한 금액의 비율이 100의 10 미만
- 2.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각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총이익률이 비교대상업체 전체의 매출액 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의100분의 50 미만이거나 100분의 150
- 매출총이익률의 현저한
   차이에 대한 명확한 수
   치 제시

 후보업체
 전체의
 매출액 총 합계액

 에서
 매출총이익
 총 합계액이
 차지

 하는
 비율

- 3. 영 제23조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판매자로부터 산출대상 품목 군과 동종·동류 물품을 구매(수입)하고, 동 수입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
- ⑨ 제8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2개 이하이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1. 제8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제외 조건을 합리적인 기

   준에 따라 완화하는 방법
- 2. 산출대상 품목군과 해당 산업부문 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후

초과인 업체

3.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영 제23조제 1항의 특수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업체

<u><삭 제></u>

• 제33조, 제34조 및 제36 조의 선정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제4방법이 아니고 제6방법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 39조제3항을 신설하고 동조항을 삭제 보)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불합리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제33조(동종·동류비율 산출) ① 세관장은 영제27조제6항에 따른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그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한다. 다만, 같은 연도에 같은 품목군에 대하여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u>경</u> 우 납세의무자, 관련 업계 또는 단체 등에게 <u>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u>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동종·동류비율 제35조(동종·동류비율의 산출 및 통보 등) ①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동종· 동류비율은 세관장이 제34조에 따라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액 총합 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합계액이 차지 하는 비율을 기초로 산출한다.

 ②
 ------ 경

 우에는
 ----- 제34조에 따른 비교대상업체 선

 정 및 이 조에 따른 동종・동류비율

- (조·항 이동) 제33조제 1항에서 이동, 동종·동 류비율 산출 및 통보 방 법을 산출대상 품목군 등의 결정, 비교대상업체 선정과 별도 조항으로 분리
  - 제34조제2항제1호 신설 에 따라 다른 납세의무 자의 비율을 준용하기 어려움
- (조·항 이동) 제33조제 2항에서 이동, 문구 수정

산출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동종·동류비율 산출) ① 세관장 은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 용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 를 주어야 한다.

- 1. 제5항제1호의 산출대상 품목군의 범위
- 2. 제5항제2호의 동종·동류 물품의 품목번호의 범위
- 3. 제7항제2호 각 목의 업종
- 4. 제7항제3호의 국내판매형태

제33조(동종・동류비율 산출) ④ 세관장 은 제32조에 따라 계산한 납세의무자 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및 제1항 에 따라 산출된 동종·동류 비율을 별 지 제1호서식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 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와 관

- ③ 세관장은 제33조. 제34조 및 제36 · (조·항 이동) 제33조 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의무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 격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제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 및 동종·동류 품목번호
- 2.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종
- 3.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내판 매형태
- 4. 제36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비율
-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동종·동류 비율을 산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이유 및 일반경 비율 산출내역서에 작성하여 납세의무 자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제10항에서 이동. 납세의 무자의 비율에 대한 의 견 제시 기회 부여 추가

(조・항 이동) 제33조제 4항에서 이동, 동종ㆍ동 류비율과 함께 납세의무 자 비율 통보

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한다.

제32조(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율 산출) ① 영 제27조제5항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 율"이란 제4방법이 적용되는 해당 수 입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에 대해 구분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을 말한다.

- ② 제1항의 동종·동류의 물품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자료에 기초하여이윤 및 일반경비를 구분 계산할 수있는 최소한의 범위에 속하는 물품으로 한다.
- ③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일이 속 하는 회계연도의 회계보고서가 작성되

1. 제1항에 따른 동종・동류비율

2. 제36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비율

제36조(납세의무자 비율 산출) ① 납세 의무자 비율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결 정된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의 물품에 대해 구분 계산한 납세의무자 의 매출액, 매출원가를 기초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산출대상품목군과동종·동류의 물품 매출액의 합 - 산출대상품목군과동종·동류의 물품 매출원가의 합 사출대산품목군과동종·동류의 물품 매출원이 한

<삭 제>

② 세관장은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일이

 (조 이동) 제32조에서 이동, 조 제목 변경, 납 세의무자의 산출대상 품 목군별 이윤 및 일반경 비율 산출 방법 규정

제1항에 따라 중복되어
 삭제

• 직전 회계연도의 회계 보고서를 적용하는 경우

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회 계보고서를 기초로 계산할 수 있다.

제34조(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 기) ① (생략)

② 영 제27조제8항에 따라 동종·동류 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납세 의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종ㆍ동 류비율 이의제기서(이하 "이의제기서" 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 하여 제33조제4항에 따라 동종・동류 비율을 통보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평 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 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유 및 그 근거자료

속하는 회계연도의 회계보고서가 작성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에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하였다면 직전 회계연도의 회계보고서를 기초로 납세 의무자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제37조(동종 · 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 | • (조 이동) 제34조에서 기) ① (현행과 같음)

-- 이를 제35조제4항 -----

1. 제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 동종 · 동류 품목번호 또는 제34조제 1항제2호에 따른 업종 등 세관장이

를 구체적으로 규정

- 이동
- 이의제기 대상을 구체 적으로 규정

2.	해당	수입	]물품	(품-	목군)에	대한	납
入	메의무.	자의	이유	밀	일반경	비	

- 3. 제2호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자 료
- ③ 납세의무자는 제33조 제5항부터 제 9항까지에 따른 비교대상(후보)업체 선정 기준을 대상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생 략)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동종·동류비율의 재검 토를 위하여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자료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 다고 판단하는 사유와 그 근거자료

2. 납세의무자가 재산출한 납세의무 자 비율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회 계 자료(제36조에 따라 세관장이 산 출한 납세의무자 비율이 불합리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u><삭 제></u>

<삭 제>

- ③ (현행과 같음)
- <u>4</u> -----

- 제2호에 포함하고 동 조항은 삭제
- 제2항에 이의제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동 조항은 삭제
- (조·항 이동) 제34조제4항에서 이동
- (조·항 이동) 제34조제5항에서 이동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 이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반려할 수 있다.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종동류 물품 의 범위 및 적정한 비교대상업체 선정 등이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이의제기서를 접 수한 날로부터 30일(자료 보완기간 제 외) 이내에 이의제기의 재검토를 완료 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 및 신청인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이 조의 이의제기에 따라 산출된 동종 · 동류비율이 제33조에 따라 산출

이의제 기한 납세의무자가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의제기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세관장 의견서에 대 한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세관장 및 이의제기한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 은 제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 · 동류 품목번호의 범위 및 제34 조에 따른 비교대상업체의 선정 등이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자료 보완기간 제외) 이내에 통 보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이의제기를 반영하여 산 · (조·항 이동) 제34조제 출된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한 과세가

- 문구 수정

(조・항 이동) 제34조제 6항에서 이동

- 문구 수정

7항에서 이동

된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적용한다.

제35조(제5방법 적용요건) 수입자가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만 으로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 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는다.

제36조(제6방법 적용요건) ① 제1방법부 터 제5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29조제2항 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격에 해 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는 합 리적인 방법과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

격이 제35조에 따라 통보한 동종·동 - 문구 수정 류비율을 적용한 과세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통보한 동종 • 동류비율을 적용한다.

- 제38조(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수입 (조 이동) 제35조에서 물품) 납세의무자가 -----제5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 다.
- 제39조(제6방법의 적용) ① 법 제30조에 (조 이동) 제36조에서 따른 제1방법부터 법 제34조에 따른 제5방법까지------ 범위 내에서 -----

- 이동
- 조 제목 변경, 문구 수 정

- 이동
- 문구 수정
- 띄어쓰기 수정

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신축 적용하여야 하며, 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u><신 설></u>

\_\_\_

- ------ 법 제30조에 따른 제1방법 부터 법 제34조에 따른 제5방법까지를 적용순서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야 하며, 이전에 -----
- ③ 제2항에 따라 제4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1. 규칙 제7조제2항의 경우
- 2. 규칙 제7조제3항의 경우
- 3. 제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 및 동종·동류 품목번호
- 4.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종
- 5.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액
- 6.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매출원가

-- | • 문구 수정

• 제6방법에서 제4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기 위 한 요건 완화 대상을 구 체적인 예시로 규정

대비 동종 · 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금액의 비율 7.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매출총이 익률 8. 제36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비율 제40조·제41조 (현행 제37조 및 제38조 · (조 이동) 제37조·제 제37조 · 제38조 (생략) 와 같음) 38조에서 이동 제39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① 제42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① • (조 이동) 제39조에서 규칙 제7조의9제1항에 따라 가산율 또 이동 는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세관 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 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을 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규칙 제7조9 제7조의9 • 문구 오류 수정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 제3항에 서식의 가산율(공제율) 결정서를 발급 하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 (생 략)	<u>제43조</u> (현행 제40조와 같음)	• (조 이동) 제40조에서 이동				
제41조(사전상담)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 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에 관하 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평 가분류원장은 상담신청일로부터 15일 내에 상담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u>제44조</u> (사전상담) <u>제43조제1항에</u>	• (조 이동) 제41조에서 이동, 근거 조항 변경				
제42조(전문가 등의 자문) ① 관세평가         분류원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전         심사를 함에 있어 신청인의 관할지 또         는 통관지 세관장, 국세청장 등 유관         정부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u>제45조(전문가 등의 자문) ①</u> <u>제43조제1항에</u>	• (조 이동) 제42조에서 이동, 근거 조항 변경				
제43조(심사결과 통보) ① 제40조제1항 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세평가분류원 장은 이를 심사하여 영 제31조제3항제	<u>제46조</u> (심사결과 통보) ① <u>제43조제1항</u> <u>에</u>	• (조 이동) 제43조에서 이동, 근거 조항 변경				
	- 20 -					

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 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통 관예정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에 대 하여 재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사 와 관련한 자료 보완, 신청내용 변경 및 업무처리기한에 관한 사항은 영 제 31조제2항·제9항 및 제1항을 준용하며, 제1항의 "별지 제13호서식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 심사 재심사 결과 통보서"로 대체한

②	
	<u>영</u> 제
31조제2항 및 제9항과 이 고시	같은조
제1항을 준용하며,	

• 문구 수정

다. (조 이동) 제44조에서 제44조 (생략) 제47조 (현행 제44조와 같음) 이동 제45조(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제48조(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 (조 이동) 제45조에서 신청) ① ~ ② (생 략) 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이동. 근거 조항 변경 ③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특수관계 사전심사 및 특수관계 간이 사전심사 또는 각각 해당 사전심사의 재심사 신 청의 반려에 관한 사항은 제40조제3항 제43조제3항 을 준용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에서 을 ----- 제43조제3항에서 "재심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 은 경우"란 제48조제3항에 따라 별지 ---- 제51조제3항에 ---제28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 심사 재심사 검토의견서(특수관계자 용)를 통보받은 경우를 말한다.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사전상담) ① 제45조에 따라 사 제49조(사전상담) ① 제48조에 ----- • (조 이동) 제46조에서 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평가분 이동. 근거 조항 변경

류원장에게 사전심사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 류원장은 사전상담을 수행할 본부세관 장을 지정해야 하며, 해당 본부세관장 은 상담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상담 기회를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제45조제4항의 사전조정 신청의 경 ② 제48조제4항의 -----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상담신청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상담기회를 신청 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7조(사전심사) ① 제45조에 따라 사 제50조(사전심사) ① 제48조에 ----- • (조 이동) 제47조에서 전심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세평가분 이동. 근거 조항 변경 류원장은 본부세관장에게 특수관계 사 전심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요청해 야 하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48조에 ③ 본부세관장은 제45조에 따른 사전

심사의 신청이 영 제31조제6항 및 <u>제</u> 40조제3항에 따른 반려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이 통보한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반려 사유에 해당될 경우 사전심사를 반려할수 있다.

#### ④ ~ ⑨ (생 략)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u>제48조제1항에</u> 따라 통보하는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은 신청물품의 수입신고 과세가격으로 인 정받을 수 있는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계산식을 포함한다)으로 결정해야 한 다.

#### ① (생략)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가 영 제31조제6항, <u>제40조제3항</u>,

제
43조제3항에
④ ~ ⑨ (현행과 같음)
⑩ <u>제51조제1항에</u>
-,
① (현행과 같음)
①
<u>제43조제3항</u> ,

제8항에 따라 반려되거나 영 제31조제 9항, <u>제48조제3항</u> 및 제4항에 따라 철 회된 경우에는 반려 또는 철회 사실을 신청인, 해당 사전심사 건을 검토하였 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사전심사 결과통보) ① 관세평가 분류원장은 제45조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영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법 제3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여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여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u>제51조제3항</u>		
<u>제51조</u> (사전심사 결과통보) <u>제48조에</u>	1	
② ~ ⑥ (현행과 같음)		

• (조 이동) 제48조에서 이동, 근거 조항 변경 ⑦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 간이 사전심사를 신청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통보서에 따라 신청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과 거 래내용의 특성에 따라 심사기간의 연 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 의하여 심사기간을 영 제31조제3항제2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사전심사 결과 변경 등) ① 관세 제52조(사전심사 결과 변경 등) ① --- • (조 이동) 제49조에서 평가분류원장은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이미 사전 심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5 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사전심 사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⑦ <u>제48</u> 조제2항에
<u>.</u>

조, 제50조 및 제51조에

② (현행과 같음)

이동. 근거 조항 변경

<u>제</u>	<u>50조(</u> 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
	37조제5항 및 영 제31조제8항에 따	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매년	사
	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7호	서
	식의 연례보고서를 제47조제11항에	따
	라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검토한 본	부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신청	인
	은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	로
	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	간
	이 6월 미만일 경우 당해 연도 연례	보
	고서를 차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	여
	제출할 수 있다.	
	1 0 (1) 7)	

- 1. ~ 6. (생략)
- ② (생 략)
- ③ 제1항에 따라 연례보고서를 제출받 은 본부세관장은 그 연례보고서를 제 출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u>제48조제5</u>

<u>제53조</u> (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①
<u>제50조제11항에</u> -
 1 C (취체과 가야)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51조제5</u>

항에 따라 교부받은 사전심사 결정서 의 내용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 신고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 부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세평 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본부세관장 은 연례보고서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7조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④ (생략)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이 통보한 사실을 검토한 결과 법 제37조 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변경. 철회 또는 취 소하려는 경우 제49조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1조 · 제52조 (생 략)

항에
<u>제50조</u>
④ (현행과 같음)
5
<u>제52조</u>
에54조·제55조 (혀해 제51조 및 제59조

- (조 이동) 제51조 및 제52조에서 이동
- 제53조(준용규정) 제40조제2항 및 제42조 제56조(준용규정) 제43조제2항 및 제45조 (조 이동) 제53조에서

와 같음)

의 규정은 특수관계 사전심사에 준용 의 -----하다. 제54조 · 제55조 (생 략) 제56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제 제59조(협의회의 운영) ① ----- 제 • (조 이동) 제56조에서 55조제2항의 심의 안건에 대하여 결정 하고자 하는 경우 제54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생략) 1. ~ 2. (생략) 3. 제5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이 소속 기관에서 상정한 안건을 심 의하는 경우 4. (생략) ③ ~ ⑧ (생 략) 제57조 (생략)

제57조·제58조 (현행 제54조 및 제55조 · (조 이동) 제54조 및 와 같음) 58조제2항의 --------- 제57조제3항에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제57조제2항제1호에 -----4.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60조 (현행 제57조와 같음)

이동. 근거 조항 변경

- 제55조에서 이동
- 이동. 근거 조항 변경

• (조 이동) 제57조에서

#### 제58조(관세평가자문단) ① (생 략)

- ② 제1항의 전문가는 자문단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자문과 관련하여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 제59조(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61조(관세평가자문단)	1	(현행과	같
<u>O</u>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	-	_	_	_	_	_	_	_	-		-	-	_	_	_	-	_	_

----- 제60조를

----

<u>제62조</u> (재검토	기한)	

----- <u>2024년 1월</u> 10

\_\_\_\_\_

-----.

부칙 <제2023-50호, 2023.8.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8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제 이동

(조 이동) 제58조에서
 이동, 근거 조항 변경

(조 이동) 제59조에서이동

• 탁송품 운임, 제4방법부

8호 및 별표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 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 별표 제7호, 별지 제1호서 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1호,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각 시행일이후 수입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터 제6방법까지 개정 규 정의 시행일 규정

 별표 제1호,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9조 개정 규정의 적용례 규 정

### 현 행 개 정

### [별표 제1호]

##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

중량 (KG)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중량 (KG)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1.0 까지	10,500	12,950	18,900	19,600	16.0 까지	59,700	105,000	129,000	217,000				
2.0 "	14,140	19,600	29,050	30,100	17.0 "	63,100	111,000	135,000	230,000				
3.0 "	17,150	22,400	35,700	38,500	18.0 "	66,500	117,000	141,000	243,000				
4.0 "	26,500	38,000	57,000	67,000	19.0 "	69,900	123,000	147,000	256,000				
5.0 "	28,500	43,400	63,000	79,000	20.0 "	73,300	129,000	153,000	269,000				
6.0 "	30,500	48,800	69,000	91,000	21.0 "	76,700	135,000	159,000	281,600				
7.0 "	32,500	54,200	75,000	103,000	22.0 "	79,900	140,500	165,000	294,200				
8.0 "	35,500	59,600	81,000	115,000	23.0 "	82,900	144,100	171,000	306,800				
9.0 "	38,500	65,000	87,000	127,000	24.0 "	85,700	146,700	177,000	319,400				
10.0 "	41,500	70,400	93,000	139,000	25.0 "	88,300	149,300	183,000	332,000				
11.0 "	44,500	75,800	99,000	152,000	26.0 "	90,900	151,900	189,000	344,600				
12.0 "	47,500	81,000	105,000	165,000	27.0 "	93,500	154,500	195,000	357,200				
13.0 "	50,500	87,000	111,000	178,000	28.0 "	96,100	157,100	201,000	369,800				
14.0 "	53,500	93,000	117,000	191,000	29.0 "	98,700	159,700	207,000	382,400				
15.0 "	56,500	99,000	123,000	204,000	30.0 "	101,300	162,300	213,000	395,000				
※ 물품의 중량이 3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30KG 해당 운임에 30KG과 29KG간의 지역													
별 운임차액을 30KG 초과중량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													
제1지역 중국, 홍콩, 일본, 마카오, 대만													
제2지역					ŀ, 인도네시 동남아시아 <sup>교</sup>		시아, 몽고	L, 싱가포트	르, 필리핀,				
	북미	미국(하와이, 알래스카 포함), 캐나다											
	서유럽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 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제3지역	동유럽	러시아,	루마니아,	폴란드, 형	]가리, 체코,	구소련연	방 등						
	중동	바레인,	이란, 이라	·크, 이스리	·엘, 요르단,	터키, 쿠위	웨이트, 사	우디아라비	아 등				
	대양주	호주, 뉴	질랜드, 파	·푸아뉴기니	· · · · · · · · · · · · · · · · · · ·	판 등							
	아시아	아프가니	스탄, 인도	트, 네팔, 피	·키스탄, 스	리랑카 등							
	아프리카	이집트,	케냐, 리비	아 등									
	중남미	멕시코,	파나마, 아	·르헨티나,	브라질, 우	루과이, 페	루 등						
제4지역	서인도제도	쿠바, 타	이티, 도미	니카 등									
	남태평양	피지, 키	 리바티, 솔	·로몬제도,	사모아 등								

### [별표 제1호]

## 탁송품 과세운임표

### 1. 적용지역별 국가명

국가별 (20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제1지역	마카오,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제2지역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네팔, 스리랑카, 몰디브, 부탄								
	서유럽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구소련연방 등								
제3지역	중동	바레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시리아 등							
	대양주	파푸아뉴기니, 괌, 사이판 등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등							
	아프리카	이집트, 케냐, 리비아 등							
키 4 <b>기</b> 6남	중남미	멕시코, 파나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페루 등							
제4지역	서인도제도	쿠바,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등							
	남태평양	피지, 키리바티, 솔로몬제도, 사모아 등							

현 행						개 정					
	2. 국가별	적용은	은 임								
	중량 (KG)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u>독일</u>	홍콩	인도네시아	<u></u> 일본	말레이시아
	1.0 까지 2.0 "	34,800 49,800	39,200 55,700		21,000 29,600	35,400 43,800	37,800 48,400	21,000 27,800	25,200 30,600	21,000	21,000 28,600
	3.0 "	61,200	72,200		38,200	51,600	59,000	34,600	36,000	39,000	36,200
	4.0 "	72,600	88,800		46,800	60,000	69,600	41,400	40,800	48,000	43,800
	5.0 "	84,000	105,000	77,400	50,400	67,800	78,000	44,400	45,600	51,600	49,800
	6.0 "	96,000	124,200		54,600	75,600	87,000	48,000	50,400	55,800	55,800
	7.0 "	107,400	143,400		58,200	84,600	96,000	51,600	55,200	60,000	61,800
	8.0 "	118,800	163,200		62,400	95,400	106,200	55,200	60,000	64,200	68,400 75,600
	9.0 "	130,200 141,600	182,400 201,600		66,600 70,200	106,200 117,000	116,400 126,600	60,000 64,800	64,800 70,200	68,400 72,000	75,600 82,200
	11.0 "	153,000	220,800		74,400		136,800	69,600	76,800	76,200	89,400
	12.0 "	165,000	240,000		78,000	138,000	147,000	74,400	83,400	80,400	96,000
	13.0 "	176,400	259,200	157,200	82,200	148,800	156,600	79,200	90,000	84,600	103,200
	14.0 "	187,800	278,400	167,400	86,400	159,600	166,800	84,000	96,600	88,200	110,400
	15.0 "	199,200	297,600	· ·	90,000	169,800		88,800	103,200	91,800	
	16.0 "	210,600	316,800		94,200	180,600	*	93,000	109,800	95,400	-
	17.0 "	222,000	336,000		99,000	191,400	197,400	97,800	116,400	99,000	
	18.0 "	234,000 245,400	355,200 375,000		103,800	202,200 213,000	207,600 217,800	102,600 107,400	122,400 129,000	102,600	· · · · · · · · · · · · · · · · · · ·
	20.0 "	256,800	394,200		112,800	223,200	228,000		135,600	100,200	
	21.0 "	268,200	413,400		117,600	234,000	237,600		142,200	113,400	
	22.0 "	279,600	, ,	247,800	,		<u> </u>	· ·		*	165,600
	23.0 "	291,600	451,800	258,000	126,600	255,600	258,000	126,600	155,400	120,600	172,200
	24.0 "	303,000	471,000	268,200	131,400	265,800	268,200	131,400	162,000	124,200	179,400
	25.0 "	314,400							168,600		186,000
	26.0 "	325,800		· ·			*		175,200	131,400	
	27.0 "	337,200	· ·		,		<u> </u>	· ·	181,800	135,000	
	28.0 "	348,600 360,600					· · ·		187,800 194,400	138,600	207,000 214,200
	30.0 "	372,000	· ·	· ·			*		· ·		
	※ 물품의	· · · · ·	*	,	,						
		* 동당의 3 백을 30KC									기 하시[편]
	E 11/1	15 00110		0 ( 1	1-1-712	× 1 /11/1	· η ⊑/ Ⅱ ∃	I L		E / 1 E	

현 행						개 정					
	중량 (KG)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 <b>KG</b> ) 1.0 까지		•	, , ,	- '	·					
	2.0 "	33,600 45,000	24,600 30,000	37,800 53,400	21,600 28,800	37,800 48,200	21,000	25,200 30,000	37,800 48,600	33,500 47,500	22,800
	3.0 "	54,600	34,200		34,200		29,800	34,800	59,400	61,000	30,600
	4.0 "	64,800	38,400	84,600	39,600		34,200	39,600	70,200	74,500	34,200
	5.0 "	75,000	42,600	96,600	45,000	79,800	37,200	43,800	78,600	88,000	37,200
	6.0 "	85,200	46,800	108,000	51,000	90,600	40,800	48,600	86,400	102,000	40,800
	7.0 "	96,000	51,000	120,000	56,400	101,400	45,000	52,800	96,600	115,500	45,000
	8.0 "	106,200	55,800	131,400	61,800	111,600	49,800	58,200	106,800	129,000	49,800
	9.0 "	117,000	60,600		67,800		54,600	63,600	117,000	142,500	54,600
	10.0 "	127,200	66,000	154,200	73,200	-	58,800	69,600	126,600	156,000	58,800
	11.0 "	138,000	70,800		78,600	·	63,600	75,600	136,800	169,500	63,600
	12.0 "	148,200	76,200	174,000	84,600	·	67,800	81,000	147,000	183,500	67,800
	13.0 "	158,400	81,000	184,200	90,000	· ·	72,600	87,000	157,200	197,000	72,600
	14.0 "	169,200 179,400	86,400 91,200	193,800 204,000	95,400 101,400		76,800 81,600	92,400 98,400	166,800 177,000	210,500 224,000	76,800
	16.0 "	190,200	96,600	214,200	106,800	-	86,400	103,800	187,200	237,500	86,400
	17.0 "	200,400	101,400	223,800	112,200		90,600	109,800	197,400	251,000	90,600
	18.0 "	211,200	106,200	234,000	117,600	·	95,400	115,200	207,000	264,500	95,400
	19.0 "	221,400	111,600	244,200	123,600	228,600	99,600	121,200	217,200	278,500	99,600
	20.0 "	232,200	116,400	253,800	129,000	239,400	104,400	126,600	227,400	292,000	104,400
	21.0 "	242,400	121,800	264,000	134,400	249,600	109,200	132,600	237,600	305,500	109,200
	22.0 "	253,200	126,600	273,600	140,400	260,400	113,400	138,600	247,200	319,000	113,400
	23.0 "	263,400	132,000	283,800	145,800	271,200	118,200	144,000	257,400	332,500	118,200
	24.0 "	274,200	136,800	294,000	151,200	281,400	122,400	150,000	267,600	346,000	122,400
	25.0 "	284,400	•	303,600		292,200	·	155,400			
	26.0 "	295,200	147,000	,	162,600	, ,		•		373,500	131,400
	27.0 "	305,400	151,800	· · ·		313,200		· ·	,	387,000	136,200
	28.0 "	315,600	157,200		174,000	,	,	· ·		400,500	
	30.0 "	326,400	162,000 167,400	,	*	334,800		,		414,000 427,500	
		/	<u> </u>	,	,	345,000	·		,		· ·
	※ 물품의	중량이 3( 액을 30KG									국가별
	군 급 사 '	기교 OVIVO	그 딱 중 '	で(工工省	-19r Ars	スコツ[A] →	/파면/케 핕	· 아이 선	<b>三</b> 也 日刊	크 /[겐	

현 행	개 정
	3. 지역별 적용 운임
	중량 (KG)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중량 (KG)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1.0 까지         21,000         25,900         37,800         39,200         16.0 까지         105,600         165,600         206,400         311,4
	2.0     "     27,600     33,400     48,400     56,900     17.0     "     111,000     177,600     218,400     329,4
	3.0 " 34,200 40,900 59,000 74,600 18.0 " 116,400 189,000 230,400 347,4
	4.0 " 40,800 48,600 69,600 92,400 19.0 " 122,400 200,400 242,400 366,0
	5.0 " 45,600 55,200 78,600 111,000 20.0 " 127,800 211,800 254,400 384,0
	6.0 " 49,800 61,200 87,600 129,000 21.0 " 133,800 223,800 265,800 402,6
	7.0     "     54,600     67,800     99,600     147,600     22.0     "     139,200     235,200     277,800     420,60       8.0     "     60,600     73,200     111,600     165,600     23.0     "     144,600     246,600     289,800     438,60
	9.0 " 66,000 84,600 123,000 183,600 24.0 " 150,600 258,000 301,800 457,2
	10.0 " 72,000 96,600 135,000 202,200 25.0 " 156,000 270,000 313,800 475,2
	11.0 " 77,400 108,000 147,000 220,200 26.0 " 161,400 281,400 325,800 493,2
	12.0 " 82,800 119,400 159,000 238,200 27.0 " 167,400 292,800 337,800 511,8
	13.0 " 88,800 130,800 171,000 256,800 28.0 " 172,800 304,200 349,200 529,8
	14.0 " 94,200 142,800 183,000 274,800 29.0 " 178,800 316,200 361,200 547,8
	15.0     "     99,600     154,200     194,400     292,800     30.0     "     184,200     327,600     373,200     566,4
	※ 물품의 중량이 3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30KG 해당 운임에 30KG과 29KG간의 지역
	운임차액을 30KG 초과중량(소수점 이하 자릿수까지 계산)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

현 행	개 정
[별표 제7호]	[별표 제7호]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서(별지 제2호서식) 작성요령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서(별지 제2호서식) 작성요령
①~③ 신청업체의 기본사항, 담당자, 전화번호 및 e-mail주소를 기재합니다.	①~③ 신청업체의 기본사항, 담당자, 전화번호 및 e-mail주소를 기재합니다.
④ '업종'은 신청품목과 연계되는 <u>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업종부호 5단위</u> 를 기재합니다.	④ '업종'은 신청품목과 연계되는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의 업종부호를 기재합니다.
⑤ '업태(국내판매형태)'에서 상품 판매, 제조가공 후 판매의 구분은 대표업종과 관계없이 수입 후 최초 판매단계의 실제 거래형태에 따라 해당 업태에 ○ 표시하십시오.	⑤ '업태(국내판매형태)'에서 상품 판매, 제조가공 후 판매의 구분은 대표업종과 관계없이 수입 후 최초 판매단계의 실제 거래형태에 따라 해당 업태에 ○ 표시하십시오.
⑦ '경유세관'은 이의제기서를 접수하는 세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⑦ '경유세관'은 이의제기서를 접수하는 세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⑨ '업종분류번호'는 동종·동류비율의 <u>비교대상 후보업체의 업종코드부호</u> 를 기재합니다.	⑨ '업종분류번호'는 동종·동류비율의 비교대상업체의 업종부호를 기재합니다.
⑩ '신청대상 회계연도'는 매년도(1월1일~12월31일)단위로 신청하고, 괄호는 신청인의 결산회계연도가 상이한 경우에 결산일을 기재합니다.	⑩ '신청대상 회계연도'는 매년도(1월1일~12월31일)단위로 신청하고, 괄호는 신청인의 결산회계연도가 상이한 경우에 결산일을 기재합니다.
① '납세의무자의 <u>대상품목군과 동종·동류물품</u> '은 납세의무자의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의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 범위를 기재합니다.	① '납세의무자의 동종·동류 품목번호'은 납세의무자의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범위를 기재합니다.
① '동종·동류비율(%)'은 세관장이 통보한 연도별 동종·동류비율을 기재합니다.	② '동종·동류비율(%)'은 세관장이 통보한 연도별 동종·동류비율을 기재합니다.
③ '신청비율(%)'은 신청인이 조사하여 선정한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총이익율의 평균을 기재합니다.	③ '신청비율(%)'은 신청인이 조사하여 선정한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총이익율의 평균을 기재합니다.
④ '이의제기 사유'는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고, 이의제기서 하단의 첨부서류에 자세히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④ '이의제기 사유'는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고, 이의제기서 하단의 첨부서류에 자세히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u></u> 현	해		 개 정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이윤	로 및 일반경	비 산출내역서	이윤 및 일반경	경비 산출내역	역 서		
납세 ① 업체명		② 대 표 자	납 세 ① 업체 명	② 대 표 자			
의 무 3 본사주소 자	(전화번호)	④ 업 종 (표준산업분류번호)	의 무 자 (전화번호)	④ 업 종 (사업자등록 정보)	( )		
	<u></u>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보 일반경비의 비율	납세의	  무자 비율			
⑤ 품명		⑥ 회계연도 결산일)	⑤ 품명	⑥ 회계연도 (결산일)			
① 품목번호 (HS 부호)	C	8)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① 품목번호 (HS 부호)	⑧ 납세의무자 비율(%)			
	<u>동종 • 동</u>	류 비율	동종 • 동류비율				
⑨ <u>산출대상</u> 품목군의 범위(제33조제5항제1호)		<ul><li>① 국내판매형태</li><li>(상품 판매, 제조가공 후 판매)</li></ul>	<ul><li>⑨ 산출대상 품목군 (제33조제1항)</li></ul>	⑩ 국내판매형태 (제34조제2항제3호)	(상품 판매, 제조가공 후 판매)		
⑪동종동류물품의품목번호범위 (제33조제5항제2호)		② 업종 범위 제33조제7항제2호 각목)	① 동종동류 품목번호 (제33조제2항)	② 업종 범위 (제34조제1항제2호 각목)			
③ 동종·동류비율(%)			③ 동종·동류비율(%)				
(비 동종·동류비율 산출근거 (비교대상업체 상호, 사업자번호, 매출액, 매출원가 등)			(4) 동종·동류비율 산출근거 (비교대상업체 상호, 사업자번호, 매출액, 매출원가 등)				
ⓑ 최종 적용 이윤 및 일 반경비의 비율(%)	(⑧납세의무자의 이	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또는 ® 동종·동류비율)	(®) 최종 적용 이윤 및 일반 경비의 비율(%)	납세의무자 비율 또는 ⑱ 동종・동	류비율)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6항,「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u>제33조제4항에</u> 따라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동종·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통보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6항,「관세평가 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동종·동류비율	_			
		20 년 월 일		20	)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O O 세	관 장 직인			

### 혂 행 [별지 제2호서식]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서 (처리기간 : 30일) 신 ① 업체명 ② 대 표 자 ③ 본사주소 ( 담당자 성명, Tel, e-mail ) 인 ⑤ 업 태 ④ 업 종 (상품 판매, 제조기공 후 판매) (국내판매형태) (표준산업분류번호) ⑥ 신청일자 ⑦ 경유세관 ⑪ 납세의무자의 ⑩ 신청대상 ⑫ 세관장의 ⑧ 산출대상 대상품목군과 ③ 신청비율 ⑨ 업종분류부호 동종·동류비율 회계연도 품목군 동종동류물품 (%) (결산일) (%) (HS부호) (4) 이의제기 사유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다음 사람에게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위 대 리 인 임 위임자 구분 주소 성명 전화번호 장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유 및 그 근거자료

- 2. 해당 수입물품(품목군)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 3. 제2호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자료

※ 별표 제7호의 신청서 작성방법에 따라 본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첨부자료와 함께 2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품목이 다수이고 해당 업종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개 정

# [별지 제2호서식]

			<u>동</u>	 종 · 동	 - 류비율	<u>}</u> 0	   의 제	    기	<u></u> 서	
<u></u> 신	( A -1	nd								터리기간 : 30일)
청	① 업 체	병					② 대 표			
인	③ 본사주	소				( [	담당자 성당	명, Tel,	e-mail)	
④ 업 (人	종  업자등록 정	보)			(	)	⑤ 업 태 (국내판	매형태)	(상품 판마	l, 제조기공 후 팬매)
⑥ 신	청일자						① 경유서	관		
	출대상 목군	9 2	<u>업종분</u> 류		신청대상 회계연도 (결산일)	동종	의무자의 ·동류품목 (HS부호)	⑫ 세곤 동종 (%)	·장의 ··동류비율	① 신청비율 (%)
					( )					
(14) O	의제기 사유	-								
	「관세법 시 의를 제기합		-	7조제7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세	관장이 통	·보한 동 2		율에 대하여 이 월 일
곤	· 산세평가	분류	루원경	당 귀ㅎ	신 청 <del>-</del>	인		대	표 (서	명 또는 인)
	다음 사림	에게	동종.	동류비율	이의제기에 괸	한 사항	·을 위임힙	니다.		
위	010	T					대 리 인	<u> </u>		
임 장	위임	감사		구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	명또	인)							
첨부	점부서류 1.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유 및 그 근거자료 2. 해당 수입물품(품목군)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3. 제2호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자료									

- ※ 별표 제7호의 신청서 작성방법에 따라 본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첨부자료와 함께 2부를 제출하시기 바 라니다
- ※ 신청품목이 다수이고 해당 업종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현 행											
[ ]	별지	제15호서식]										
	과	·세가격결정방	법 사전심사 검	넘토의견서【특	특수관계자용 <b>】</b>							
	신 청	① 상 호		② 대 표 자								
	· 인	③ 주 소		· (전화번호)								
	관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련 기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티	├(관계: )							
	업	① 국가 및 주소										
	8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수입예정시기								
	10	사전심사 검토의견		⑪ 근거 또는 이유								
		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 미침									
		향을 미쳤는지 여부	영향 미치지 않음									
		세법 제30조제1항 내지 항에 따른 가산 또는	가산요소( )									
		네요소 해당 여부	공제요소( )									
		네법 제31조 내지 제35조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법 제조 적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위와 같이 통보 합니다.	<sub>」 <u>제 48조에</u> 따라 특수관계</sub>	ᅨ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을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	부류원장 (인)							
			귀 하									

- ※ 1. 검토의견에 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 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 2. 검토의견에 부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3.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 정

[별지 제15호서식]

과	·세가격결정방	법 사전심사 검	は토의견서 【♬	<b>특수관계자용</b> 】
신 청	① 상 호		② 대 표 자	
인	③ 주 소		(전화번호)	
관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련 기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	-(관계: )
업	⑦ 국가 및 주소			
(8)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수입예정시기	
10)	사전심사 검토의견		⑪ 근거 또는 이유	
특수	· - - - - - - - - - - - - - - - - - - -	영향 미침		
영형	향을 미쳤는지 여부	영향 미치지 않음		
	네법 제30조제1항 내지 항에 따른 가산 또는	가산요소( )		
	세요소 해당 여부	공제요소( )		
	네법 제31조 내지 제35조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법 제조 적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제51조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인)

귀 하

- ※ 1. 검토의견에 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 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 2. 검토의견에 부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3.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변지 제16호서식]		개 정 [별지 제16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 [특수관계자용]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 [특수관계자용]				
신 성 성	② 대 표 자	신 청 2 대 표 자				
인 ③ 주 소	(전화번호)	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관련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	관련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				
⑧ 사전심사 결정물품		®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20         ⑪ 연례보고 세관 및 부서	. ⑩ 통관예정세관	⑨ 적용기간     20 ~ 20     ⑩ 통관예정세관       ⑪ 연례보고 세관 및 부서				
③ 신청내용 ③ 사전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③ 사전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④ 결정조건		14) 결정조건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시	·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	원장 직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 5년 >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 5 ※ 관세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 통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분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뒷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관세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 1.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의 실현

신청인은 사전심사 적용기간 중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켜야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가. 결정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 및 거래조건 등의 동일성 유지
- 나.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 다. 시장상황이나 경제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없을 것
-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조건 등

### 2. 신청인의 사전심사 결정서 변경 요청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 결정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3.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된 사전심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
- 나. 관련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 정하지 않게 된 경우
- 다.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라.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4. 사전심사 결정의 철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5. 사전심사 결정의 취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서류 중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나.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 6. 연례보고서의 제출

신청인은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이 해당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6월 미만일 경우 당해년도 연례보고서를 차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은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의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나.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 다.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 ※「관세법 시행령」제31조제7항제4호 및「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u>제50조에</u> 따라 사전 심사 결과의 통보일을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사전심사 적용 기간을 최대 2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 1.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의 실현

신청인은 사전심사 적용기간 중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켜야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가. 결정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 및 거래조건 등의 동일성 유지
- 나.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 다. 시장상황이나 경제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없을 것
-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조건 등

### 2. 신청인의 사전심사 결정서 변경 요청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 결정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3.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된 사전심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
- 나. 관련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 정하지 않게 된 경우
- 다.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라.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4. 사전심사 결정의 철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5. 사전심사 결정의 취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서류 중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나.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 6. 연례보고서의 제출

신청인은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이 해당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6월 미만일 경우 당해년도 연례보고서를 차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은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의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 나.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 다.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 ※「관세법 시행령」제31조제7항제4호 및「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제53조에 따라 사전 심사 결과의 통보일을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사전심사 적용 기간을 최대 2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혂 행 [별지 제17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연례보고서 ② 대 표 자 보 ① 상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결정물품 (첨부가능) ⑤ 회계연도 ⑥ 통관세관 법인명(상호) 대 표 자 관련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결과 9 적 용 기 간 ⑩ 실제 거래가격 결정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산출과정)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제4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결과에 따른 연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전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및 가정의 실현여부 2. 사전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 3.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 4.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출자관계, 재무제표, 수입물품 전체 현황,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 별 가격산출방법
- 5. 주요 매입처, 매출처별 매입원가 및 매출원가 등 상품 및 제품 가격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 6.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개 정

별지 ——	제17호서식]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성	닠사 연례보고	서			
보	① 상 호		② 대 표 자				
고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4	결정물품		(첨부기	가능)			
(5) 3	회계연도		⑥ 통관세관				
	법인명(상호)		대 표 자				
⑦ 관련 기업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 본·지점관계 □ 기타(괸	·계: )			
	국가 및 주소						
<u> </u>	다 O 기 기						
	적 용 기 간 시계 기계기건 경제바법 /3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산출과?					
	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시」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선	심사결과에 따른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1		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세가격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					

- 3.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 4.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출자관계, 재무제표, 수입물품 전체 현황,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 별 가격산출방법
- 5. 주요 매입처, 매출처별 매입원가 및 매출원가 등 상품 및 제품 가격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 6.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현 행			개 정	
별ス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 <sup>.</sup> 사전조정 신청서	격		가격 결정방법과 국 출방법의 사전조정 선	
			(처리기간	: 90일)			(처리기간 : 90일)
신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신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도 자
청 인	③ 주 소		(전화번호)		청   인 ③ 주 소		· (전화번호)
관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관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E 자
년 년 기	⑥ 신청인과의 관계	□모자관계(지	 분율 %)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		변 경 (⑥ 신청인과의 관계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 │ □기타(관계: )
업 업	⑦ 국가 및 주소				업 ⑦ 국가 및 주소		
	8 수입 예정 물품 (클		(품목별·규격별 명세 기재)		⑧ 수입 예정 등	물품 (품목별·규 <sup>.</sup>	
고난	⑨ 수입 예정 세 과세가격	시기	⑩ 통관 예정 세관		9 수입 예정 / 관세 과세가격	시기	⑩ 통관 예정 세관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 ⑪ 수입가격 결정방법 (필요시 별지로 작성)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 ⑪ 수입가격 결	결정방법 (필요시	별지로 작성)	
	⑫ 대상거래				⑫ 대상거래		
ᄀ	③ 적용기간				③ 적용기간 국세 정상가격		
1	반출방법 변승인 신청 (4) 정상가격 1	산출방법	(필요시 별지로 작성)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4) 정상가격 산	난출방법 (필요시	별지로 작성)
	「관세법」 제37조의2제	  1항에 따라 위외	· 같이 사전조정을 신청합니다.		「관세법」 제 37조의 2제 1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조정을 신청	당합니다.
			20 년 월 일			2	0 년 월 일
		4	<b>신청인</b> (서명 또는 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1	관세청 관세평가	분류원장 귀	하		관세청 관세평가분	부류원장 귀하	
		-	<u>1항에</u> 따른 신청서(신청서의 첨부서류를 포함한 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신청서의 첨부서류를 포함			고시」제48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신청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현 행					개 정				
별지	제28호서식]			]	별지	제28호서식]			
고	세기격 결정방법	시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서	【특수관계자용】		과	세기격 결정방법	시전심사 재심/	나 검토의견서	【특수관계자용】
신	① 상 호	② 대 표 자			신	① 상 호		② 대 표 자	
청 인	③ 주 소	(전화번호)			청 인	③ 주 소		(전화번호)	
관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관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련 기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티	├(관계: )		련 기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티	├(관계: )
업	① 국가 및 주소				업	⑦ 국가 및 주소			
8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물품	⑨ 수입예정시기			8			⑨ 수입예정시기	
10	재심사 신청 요지				10	재심사 신청 요지			
(1)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	사 재심사 검토의견			(1)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	사 재심사 검토의견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사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통	시」 <u>제48조제3항에</u> 따라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결 불보 합니다.	정방법 사전심사 재심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제51조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 사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	류원장 (인)				ą	관세청 관세평가분	류원장 (인)
		귀 하					귀 하		
*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	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의를 제출한 선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b>*</b> 1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	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 h여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 선심사 재심사 결정서」를 신	원장은 동의를 제출한	
2	2.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 것으로 간주합니다.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2	.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분 것으로 간주합니다.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	전심사 재심사 신청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변지 제29호서식]	9	[별지	제29호서식]	개 정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7	대심사 결정서 [ <del>특수관</del> 계자용]	고	세기격 결정	방법 시전심사 재심서	나 결정서 [ <del>특</del>	수관계자용】
신 ① 상 호 청	② 대 표 자	_ 신 참	① 상호		② 대 표 자	
인 ③ 주 소	(전화번호)	-   청 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관련 기업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	- 관련 기업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	·지점관계 🗆 기타(관:	계: )
① 국가 및 주소			⑦ 국가 및 주소			
⑧ 시전심사 재심사 결정물품		8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물	<u> </u>		
⑨ 적용기간 20 ~ 20 .	⑩ 통관예정세관	9	적용기간	20 ~ 20	⑩ 통관예정세관	
⑪ 연례보고 세관 및 부서		(1)	연례보고 세관 및 부서			
③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④ 결정조건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결정조건	과세가격결정방법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재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재심사 결정서를 교부 <sup>:</sup>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	이야 합니다.	
· 현세합」 제37보제2형에 따라 귀와 같이 와제기	각 자신검사 제검사 결정시를 교무합니다. 20 년 월 일		· 전세립] - 제3/고제28	3에 따다 귀와 끝이 과제가역 자신학		<u></u>
관세청 관세평가는	부 <b>류원장</b> 직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장 직인	
<		관세법 제42조의2제1형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연 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 통보 <sup>6</sup>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여 1호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을	 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 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		

개 정

### [별지 제29호서식 <뒷면>]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 1.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의 실현

신청인은 사전심사 적용기간 중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켜야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가. 결정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 및 거래조건 등의 동일성 유지
- 나.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 다. 시장상황이나 경제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없을 것
-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조건 등

### 2. 신청인의 사전심사 결정서 변경 요청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 결정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3.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된 사전심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
- 나. 관련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 정하지 않게 된 경우
- 다.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라.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4. 사전심사 결정의 철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5. 사전심사 결정의 취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서류 중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나.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 6. 연례보고서의 제출

신청인은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이 해당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6월 미만일 경우 당해년도 연례보고서를 차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은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 나.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 다.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 ※「관세법 시행령」제31조제7항제4호 및「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u>제50조에</u>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을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사전심사 적용기간을 최대 2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29호서식 <뒷면>]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 1.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의 실현

신청인은 사전심사 적용기간 중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켜야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가. 결정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 및 거래조건 등의 동일성 유지
- 나. 결정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 다. 시장상황이나 경제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없을 것
-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조건 등

### 2. 신청인의 사전심사 결정서 변경 요청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 사전심사 결정의 주요 가정 및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 결정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3.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된 사전심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
- 나. 관련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 정하지 않게 된 경우
- 다.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라.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4. 사전심사 결정의 철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신청인이 연례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5. 사전심사 결정의 취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서류 중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나.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 6. 연례보고서의 제출

신청인은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이 해당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6월 미만일 경우 당해년도 연례보고서를 차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은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 나.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다.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 다. 세2호에 따라 산술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자이에 대한 저리대역 라.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 ※「관세법 시행령」제31조제7항제4호 및「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제53조에 따라 사전 심사 결과의 통보일을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사전심사 적용기간을 최대 2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 행 [별지 제30호서식]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서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 30일) 신 1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련 ⑥ 신청인과의 관계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기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 . ~ 20 . . . ⑩ 사전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⑪ 결정조건 ⑫ 적용기간 연장신청 내용 20 . . . ~ 20 . . . (4) 통관예정세관 ⑬ 연장신청기간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제4호,「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u>제50조제1항에</u> 따라 위와 같 이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수입물품거래 관련 계약서(수입물품 구매(공급) 계약서, 수입물품과 관련된 기술용역계약서 등 포함)

- 2. 사전심사 결정물품의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 정

[별지 제30호서식]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서

별시 제30호서식] 특수관계 사선심사 석봉기간 연상 신청서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	기간 연정	<b>ነ</b> 신청서					
				(처리기간 : 30일)					
신 청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인	③ 주 소		(전화번 3	<u>\$</u> )					
관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련 기	⑥ 신청인과의 관계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	사관계 □기타(관	계: )					
업	⑦ 국가 및 주소								
8	사전심사 결정물품								
9	적용기간	20 ~ 20							
10	사전심사 결과 과세가	격결정방법							
<u> </u>	 결정조건								
Ш	실경조신								
(12)	적용기간 연장신청 내용	<del>,</del>							
(13)	연장신청기간	20 ~ 20	⑭ 통관예정세-	관					
Г	관세법 시행령」 제31:	도제7항제4호,「관세평가 운영아	╵ ∥ 관한 고시」제5	 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					
		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b>신청인</b> (서	명 또는 인) 						
	구비서류> - 스이므프기에 자려 게이	합니(소이므프 그레/고크) 케야티	스이므프게 지러드	I 기스요여게아니 드 ㅠㅎ!\					
4. 수입물품거래 관련 계약서(수입물품 구매(공급) 계약서, 수입물품과 관련된 기술용역계약서 등 포함) 5. 사전심사 결정물품의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 행					개 정			
별지	제31호서식]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계	간 연장 승인서	[별	별지	제31호서식] 특수관계	계 사전심사 적용기건	간 연장 승인/	₹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	기간 연장 승인서			특수관계 시	h전심사 적용 <b>기</b>	기간 연장	승인서
신 청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신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인	③ 주 소	(전화번호)		청 - 인	③ 주 소		(전화번호	)
관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관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련 기	면 면 ⑥ 신청인과의 관계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기타(관계: )			련 기	련			1: )
업	① 국가 및 주소			업	⑦ 국가 및 주소			
8	사전심사 결정물품			8 .	사전심사 결정물품			
9	적용기간 20 ~ 20			⑨ 적용기간 20 ~ 20				
10	적용기간 연장신청 내용			10 2	적용기간 연장신청 내용			
10)	적용기간 연장신청 심사 결과			10	적용기간 연장신청 심사 결괴	각		
(13)	연장신청 심사결과 연장적용기간 20 ~ 20	⑭ 통관예정세관			연장신청 심사결과 연장적용기간	~ 20	⑭ 통관예정세관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제4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u>제51조제3항에</u> 따라 위와 같이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승인서를 교부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7 이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			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관세	청 관세평가분류원	<b>실장</b> 직인	